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8 선고 2019가합40655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지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정현
변론 종결 2021. 4. 16.
판결 선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3. 체결된 2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은 D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7. 4.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달 13. 위 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E종합법무법인 등부 2017년 제173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 D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F은 2017. 3. 20. 원고로부터 합계 1,174,171,000원의 지급위를 받아 2017. 3. 31.까지 G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와의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011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원리금의 지급 및 소송관련 일체의 정리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대표변호사 F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7. 4. 11. 현재까지도 판결원리금의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이로 인해 의뢰인인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다.

○ D 법무법인과 변호사 F, I, C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011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2017. 4. 24.까지 원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 원리금 1,160,088,286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나. 원고는 2019. 5. 14. F, C 등을 상대로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5095),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다. 한편, 피고는 J으로부터 광명시 K 외 1 소재 L아파트 M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원, 임대차기간 2017. 2. 24.부터 2019.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4.부터 C과 같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이하 위 아파트를 '종전 거주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 20. N, O로부터 광명시 P 소재 L아파트 Q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6억 9,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 3. 27.위 아파트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6억 9,800만 원을, 피고는 N, O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이하 순번 6번 수표를 '이 사건 수표'라 한다).

순번	일시	지급방식	금액
1	2018. 1. 16.	계좌이체	4,000,000원
2	2018. 1. 20.	계좌이체	36,000,000원
3	2018. 3. 27.	계좌이체	50,000,000원
4	2018. 4. 3.	계좌이체	280,000,000원
5	"	계좌이체	20,000,000원
6	"	수표	300,000,000원
7	"	계좌이체	8,000,000원
		합계	698,000,000원

바. 위 표 기재 돈 중 순번 1 내지 3, 5, 7의 각 돈은 피고가 자신의 R은행 신용한도대출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것이고, 순번 4의 돈은 피고가 S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018. 4. 3.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이 사건 수표로 지급하였다. 위 수표는 피고가 종전 거주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받은 것인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억 6,000만 원은 C의 돈이었으므로, 결국 C이 2018. 4. 3.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야한다.

원고의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2억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R은행신용한도대출계좌에서 종전 거주지 임대인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1. 18. 3,000만 원(계약금), 같은 해 2. 1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이 2017. 2. 20. 피고에게 2,000만 원, 2017. 2. 24. J에게 2억 4,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인 J과 종전 거주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 종전 거주지를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C이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J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와 같이 종전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C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종전 거주지 임대인인 J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3억원은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3) 따라서 피고가 종전 거주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18. 4. 3. 임대인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3억 원을 받은 것은,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2018. 4. 3.까지도 C의 소유로 남았다가 그 때 비로소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4)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2017. 2. 20.과 2017. 2. 24. 이 사건 송금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 5) 결국 C과 피고 사이에 2018. 4. 3.자 2억 6,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숙, 판사 권슬기, 판사 김웅수